

# 2014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의 수상작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8월 관세청이 개최한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의 수상작 일부를 소개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FTA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진파해 나갈 계획이다.

## FTA 활용지원 분야 : 대상(이화다이아몬드㈜) 중견기업의 롤모델, FTA 정착의 길 제시


### 수출업체 개요

설립일자	업종	'13년 매출액(수출액, 비중)	직원 수	주요 생산물품
1975.1.22	공구제조업	215,288백만원(124,723천\$, 61%)	729명	다이아몬드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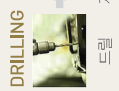
- 회사는 다이아몬드공구만을 38년간 전문 연구제조하여 80여개 국으로 수출하는 중견기업으로서 적극적인 FTA 활용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공구전문기업으로 지속 성장
- 회사의 제품은 반도체, 태양광, 자동차, 전기, 항공기, 건설 산업 등 피식재 가공에 필수적인 공구로서 축적된 기술력과 특허\* 출원된 노하우 ▶ 고품질 전략화로 경쟁국의 저가제품과 차별화

\*특허 : 242건(해외:123건), 신규 등록중 : 103건


### 다이아몬드공구 사용분야



CUTTING  
절삭:도로



DRILLING  
드릴:자동차·엔진(금속)



GRINDING  
시포:반도체·실리콘웨이퍼

### 수출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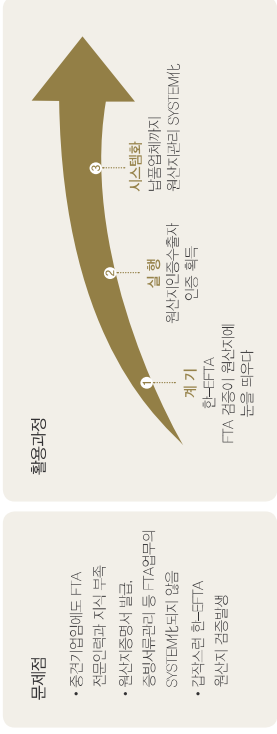
'13년 수출 대비 국가별 점유율	적용 가능한 FTA	주요 거래처
 <p>기타 39% EU 42% 미국 15% 아세안 2% 인도 2%</p>	EU, 미국, EFTA, 아세안, 인도, 타기, 페루, 칠레	삼성, 하이닉스, 애플, 현대, 도요타, GM, 포드, BOSCH, HETI 등 세계적 기업

### 활용사례

#### FTA 활용 前

- 회사의 다이아몬드공구는 '01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화 상품으로 선정 받은 우리나라의 성장전략 품목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들어 저가의 중국제품이 EU 등 주요 시장에서 밀려들면서 가격경쟁이 격화되는 현상
-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이 점차 기술력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품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격경쟁력 확보의 중요성 대두
- 對EU수출이 전체 수출량의 42%를 차지하는 同社は '11년 한-EU FTA를 선점하여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발생
- 한편, FTA에 대한 정보와 지식 부족으로 활용에 매우 소극적이었기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한-EU FTA는 큰 부담이 되었고 오히려 risk가 될 수 있는 상황

**한-EU FTA 활용 과정**



**문제점**

- 중견기업이든 FTA 전문인력과 지식 부족
- 원산지증명서 발급, 증명서류관리 등 FTA업무의 SYSTEMIC화되지 않음
- 각자만의 한-EU FTA 원산지 검증법생

① 한-EU FTA 관련 검증을 받다

- 실질 검증으로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인식
- '11년초 한-EU FTA 관련하여 스위스세관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인천세관의 원산지 검증을 받게 된다(행히 원산지 KR 판정) → 이때 실제적인 FTA검증을 계기로 구체적인 원산지관리 및 판정에 대해 이해
- 세관의 원산지 상담을 통한 FTA 활용기반 마련
- 검증완료 후 본격적인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FTA합정문 및 인증수출자 규정에 대해 인천세관과 상담

②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 한-EU FTA 활용 시 관세혜택 확인

HS	적용합정	원산지결정기준	관세혜택
6804.21 외 3개	한-EU FTA	CTH	기초세율 1.7~2.7%, 합정세율 0%

-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행 전산화 구축 시작
- 수입업체의 C/O 요청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ERP(SAP)에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행 전산화 구축 시작
-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관의무 이행을 위해 전자적 보관
-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11.7.28)

- 인천세관과 FTA 종합컨설팅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 수출입통관실무 경력자를 FTA전담관리자로 지정하여 세관과 소통
- FTA 정부지원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연 6회이상 FTA 교육 참여
- 자체적인 FTA관리시스템 개발 완료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13.8.22)

③ 협력업체까지 관리하는 SYSTEMIC화 완료

- FTA전담관리자 운용으로 사내 및 협력사 등과 업무협조
- 생산, 영업 외 전문 관리부서를 두는 것이 어려운 중견기업의 형편이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15년 이상 수출입통관실무를 담당한 사내 경력직임을 FTA전담관리자로 지정하여 사내 및 협력사 관리
- FTA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맞춤형 내부교육 자료를 자체 제작
- 많은 외부교육을 전담 소화하여 FTA 전문성 극대화
- 회사 시스템과 제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FTA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직원 및 협력사 수시 교육
- 자체 ERP(SAP)에 FTA합정별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행 시스템 구축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변경으로 자율발급 가능

**활용성과**

C/O 자율발급	정량효과 수출증가	일자리 창출	정성효과
<p>C/O 자율발급</p> <p>▶ FTA활용 선점</p>	<p>수출액(만불)</p> <p>▶ 가격 경쟁력 제고</p>	<p>직원</p> <p>▶ 고용창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수출자 획득으로 원국산 신라도 증가</li> <li>- 협력사에 대한 FTA교육 등 네트워킹 확대</li> </ul>

2013년 원산지증명서(신고서) 자율발급 100%로 FTA 선정

합중국 수출대비 원산지증명서 발행한 매출액 비중			
EU	미국	인도	기타
100%	100%	50%	*FTA, 타카, 페루, 칠레
		38%	100%

- 수출하는 물량 96%(EU 42% > 기타 39%) 미국 15%를 차지하는 합중국에 대하여 100% 원산지증명서 자율발행으로 FTA 선정효과

한-EU FTA('11.07.1.발효 이후) 성과

구분	기간	수출액(만 불)	FTA활용
발효 전	'10.07.1.~'11.06.30.	4,883	연평균 5,598.1
발효 후	'11.07.1.~'14.06.30.	16,795	100%

- 발효 전 대비 수출금액 : 연 평균 15%정도 증가추세
- 수입업체는 '11년 FTA발효 이후 해당품목의 관세 전면 철폐로 약 453만 불 상당의 관세 절감 효과(기본세율 2.7% → 협정세율 0%)
- 수주물량 증가로 인한 고용창출(직인 수 : 574명 → 729명)

협력업체 등 FTA활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준비로 다져진 경험을 토대로 원산지관리에 대한 자신감 향상
- 2013. 8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등 FTA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EU 업체와 당사 원산지증명서 및 한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증가

특징

-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수출인통관 경력이 오랜 직원을 FTA 전담관리자로 지정하여 전문 기로 육성 → 효과적인 사내 및 협력사 FTA전문가로 활동
- 회사 시스템과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로 FTA관리 전산화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최소 인원으로 FTA활용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지름길 역할

시사점

- 회사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견기업이 외부교육을 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ERP를 활용하여 자체적인 FTA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FTA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SYSTEM화
- 이에 그치지 않고 협력사에 원산지관리업무 지원 및 FTA 교육 실시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견기업으로서의 모범사례

FTA 활용지원 분야 : 최우수상(대구세관)

위기의 '섬유' FTA 파고 넘어 세계로 비상(飛上)

배경

- 국내 섬유산업에서 대구·경북 섬유산업의 비중은 업체수, 고용인원, 출하액, 수출액 모두 약 25%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최대 섬유산지
- 중국 등 후발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지역 섬유업체가 최대 위기를 맞이했지만 EU, 미국, 터키 등 섬유 주 수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FTA 활용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부상
- 섬유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관세수준이 높아 FTA 활용으로 인한 관세혜택 효과가 상당히 크지만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품목보다 까다로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 한-EU FTA : yarn forward rule(원사규정)
- 과거에는 유행을 잘 활용했거나 염색기술 등 품질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었지만, 후발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원가 무한 경쟁시대 돌입
- FTA 활용을 통한 수입국 관세혜택으로 가격경쟁력 향상이 시급

## FTA 활용

### 장애요인

- 어렵고 복잡한 섬유류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 원재료의 혼용률에 따라 품목분류 상이, 품목별 관세철폐 스케줄 상이
- 한-미 FTA에서 원사는 대부분이 반드시 한국산이어야 하지만 편직물(6006,42)인 경우 비스코스 레이온사(5403,10, 5403,31, 5403,32, 5403,41)는 비역나산을 사용해도 원산지를 인정
- 한-미 FTA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으로 FTA 활용 미리 포기
- \* 한-미 FTA에서 섬유제품의 경우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에 따라 협정 당사국산 '실'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작 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만 원산지 인정
- 지역 섬유업체 대부분이 중소·영세업체로 FTA 활용 및 특혜대상 신제품 개발 어려움  
 절대적 부족

### 극복과정

- 지역 섬유업체 FTA 활용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 체결  
 (대구세관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지역 섬유업체 대상 FTA 실무교육 및 컨설팅 상시지원체제 가동
- 주요 섬유제품 미국 품목번호 HS 해설서 발간(한-미 FTA)
- 경북 섬유생산기술활용 FTA 지원사업 실시(경상북도 등 예산 2억 유치)  
 (대구세관 → 경상북도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 FTA 체결국별 양허조건 분석, 관세 즉시 철폐 및 기간 단축 품목 발굴
- FTA 활용 가능 섬유 업체 선정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 품목분류 및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컨설팅
- 생산기술과 FTA 전문지식을 접목하여 관세혜택 품목 신제품 연구·개발
- 신제품 FTA 확산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및 비즈니스 지원

## 경북 섬유생산기술활용 FTA 지원사업 요약

구분	내용
실무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실무교육(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li> <li>• 업체별 맞춤형 컨설팅(생산 제품 분석)</li> </ul>
관세혜택품목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혜택품목 발굴</li> <li>• 관세혜택품목 개발</li> <li>• 한정생산기술 지원</li> </ul>
사업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케팅센터 연계지원</li> </ul>

## 활용효과

- 활용사례 요약

사례	기존 생산품목	개발품목(신제품)
Y사	합성필라멘트 직물(5407,52) - 원재료 : 합성필라멘트사(100%) - 한·미 FTA 세율 : 10.4%(14년)	합성스테이플 직물(5112,10) - 원재료 • 합성스테이플사(85%) • 합성필라멘트사(15%) - 한·미 FTA 세율 : 즉시철폐(0%) - 기존 생산품보다 고품질
T사	합성필라멘트 편직물(6006,32) - 원재료 : 합성필라멘트사(100%) - 한·미 FTA 세율 : 7%(14년)	비스코스레이온 편직물(6006,42) - 원재료 : 비스코스레이온사(100%) - 한·미 FTA 세율 : 즉시철폐(0%) - 인제친화형 고품질
D사	합성필라멘트 직물(5407,69) - 원재료 : Poly(98%) / Spant(4%) - 한·미 FTA 세율 : 10.4%(14년) - 타키 : 반담판면세부과(최고 40%)	직/단섬유 교직물(6516,22) - 원재료 : Poly(49%) / Modal(51%) - 한·미 FTA 세율 : 즉시철폐(0%) - 타키 : 반담판면세 제외

### 활용사례 상세내용

- 원사 혼용률 조정을 통한 특혜대상 품목 개발로 미국시장 진출(Y사)

구분	수출물품	HS	한-미 FTA 관세철폐스케줄	특징
FTA 활용 전 (기준생산품)	합성필라멘트 직물 *장섬유	5407.52 <원재료> ① 합성필라멘트사(100%)	10년 단계적 철폐 ('14년 10.4%)	- 원재료 상대적으 로 저렴
FTA 활용 후 (신제품 개발)	합성스테이플 직물 *단섬유	5512.19 <원재료> ① 합성스테이플섬유사(85%) ② 합성필라멘트사(15%)	즉시철폐 (0%)	- 관세 즉시철폐 대상 (원가상분 생체) - 품질 우수

### 활용과정

- 주요 생산품인 합성필라멘트 직물(HS 5407.52)은 한-미 FTA 관세 즉시 철폐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국 등 경쟁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세 → 미국시장 진출 애로

\* 5407.52 : 관세 철폐 스케줄('10년, 2014년 10.4%)

- 주요 생산품과 유사한 물품 중 한-미 FTA 즉시 활용 가능 품목 개발 · 연구
- 직물의 원재료인 원사의 혼용률을 변환시켜 한-미 FTA 관세 즉시 철폐 품목 신제품 개발(HS 5512.19)

\* 5512.19 : 한-미 FTA 관세 철폐 스케줄(즉시철폐)

\* 원재료 변경내역

원재료	변경 전	변경 후
① 합성필라멘트사(100%)장섬유	▶	① 합성스테이플섬유사(85%) (단섬유) ② 합성필라멘트사(15%)

### 활용효과

- 합성스테이플섬유사는 합성필라멘트섬유사보다 원가가 조금 높지만, 수출제품(직물)이 FTA 즉시 관세철폐 대상 품목이 됨으로써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시켰으며, 합성필라멘트 직물보다 품질이 고급화되어 미국시장 공략 성공
- 미국 MSA 연 12만 yards(48만 볼) 계약 성사 등 향후 10년간 500만 볼 이상 對美 수출 파급 효과 창출

- 한-미 FTA 예외원사를 사용하여 'yarn-forward rule' 극복(Γ사)

구분	수출물품	HS	한-미 FTA 관세철폐스케줄	특징
FTA 활용 전 (기준생산품)	합성필라멘트 편직물 ① 합성필라멘트사(100%)	6006.32 <원재료> ① 합성필라멘트사(100%)	10년 단계적 철폐 ('14년 7%)	- 원재료 상대적으 로 저렴
FTA 활용 후 (신제품 개발)	비스코스 레이온 편직물 ① 비스코스 레이온사*	6006.42 <원재료> ① 비스코스 레이온사* (원산지 : CN)	즉시철폐 (0%)	- 관세 즉시철폐 대상 - 인쇄친화형 고품질 니트

\* 비스코스 레이온사

'비스코스 레이온사'는 펄프(나무)로부터 생산되는 천연원사로 촉감이 견고 이주 흡수하여 인감이 만든 비단(인견)으로 불리며, 천연섬유에 가까운 정전기 발생하지 않고 땀흡수 및 통풍성이 뛰어나,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그에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원사

### 활용과정

- 한-미 FTA 섬유품목은 'yarn-forward rule'이 일반적이어서 FTA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산 원사를 사용해야 하며,

- 한국산 원사를 사용하더라도 수출물품의 한-미 FTA 관세철폐 스케줄이 10년으로 관세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고품질 품목 개발 시급

- 합성필라멘트 '비스코스 레이온사'(5403.31, 32)는 한-미 FTA 'yarn-forward rule' 제외품목인 것을 확인(비원산지 원사 사용 가능), '비스코스 레이온사'를 수입하여 편직물품 생산

\* 단, 합성스테이플 '비스코스 레이온사'(5510호)는 'yarn-forward rule' 적용

\* 원재료 변경내역

원재료	변경 전	변경 후
① 합성필라멘트사(원산지: KR)	▶	① 비스코스레이온사(원산지: CN)

- 또한, '비스코스 레이온사'로 편직한 '6006.42' 품목은 한-미 FTA 관세 즉시 철폐 품목

- 6006.42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HS	품명	원산지결정기준
6006.42	편물 (재봉·반항성 섬유로 만든 것)	다른 료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류,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또는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소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소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제5501호 내지 소호 제5503.20호, 소호 제5503.40호 내지 제5503.90호, 또는 제5505호 내지 제551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상기 편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나,
- 붉은 비스산의 품목(원사)을 제외하고 있는 대표적인 'yarn-forward rule'
- 하지만, 5403.31,32의 '비스코스 레이온사'는 제외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 가능

**활용효과**

- 국내의 높은 가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입 '비스코스 레이온사'로 편직 및 염색하여 한-미 FTA 관세 즉시 철폐 대상 고품질 한국산 원단 개발(6006.42)
- ❖ 한-미 FTA 맞춤형 신제품 개발이라는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미국시장 진출 성공 및 향후 10년간 300만 불 이상 수출 예상
- 한-전략적 신제품 개발로 특정시장(타키, 미국) 공략(D사)

구분	수출물품	HS	한-미 FTA 관세철폐스케줄	특징
FTA 활용 전 (기존생산품)	FABRICS (PET/직물)	5407.69 <원재료> ① Poly(96%) ② Spant(4%)	반덤핑관세 부과 (최고 40%)	- 관세철폐스케줄 : 10년(14년 10.4%)
FTA 활용 후 (신제품 개발)	FABRICS (PET/Modal 교직물)	5516.22 <원재료> ① Poly(49%) ② Modal(51%)*	반덤핑관세 없음	- 관세철폐스케줄 : 즉시철폐(0%)

\* Modal이란 재생섬유의 하나로, 만드는 방법과 기능은 비스코스 레이온과 거의 같으며, 너도밤나무에서 추출한 천연섬유로 21세기 품의 섬유로 일컬어짐

**활용과정**

- 주요 생산품인 합성필라멘트 직물(HS 5407.69)은 타키 수출 시 최고 40%의 반덤핑관세 부과
- 한-미 FTA에서도 관세 즉시 철폐품목에서 제외  
\* 5407.69 : 관세 철폐 스케줄(10년, 2014년 10.4%)  
→ 타키 및 미국시장 진출 애로
-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한-타키 및 한-미 FTA 즉시 활용 가능 신제품 개발 · 연구
- 직물의 원재료인 원사의 혼용율을 변환시켜 한-타키 및 한-미 FTA 동시 활용 가능 신제품 개발(HS 5516.22)  
\* 한-타키 : 반덤핑관세 제외대상(40% 관세 혜택)  
\* 한-미 : 관세 철폐 스케줄(즉시철폐)  
\* 원재료 변경내역

원재료	변경 전	변경 후
	① Poly(96%) ② Spant(4%)	① Poly(49%) ② Modal(51%)

**활용효과**

- 신제품인 Poly/Modal 교직물(5516.22)은 Modal사의 사용으로 Poly 직물보다 원가가 조금 높지만, 한-미 FTA 즉시 관세철폐 대상 및 한-타키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원가 상승분을 상쇄시키고, Poly 직물보다 품질이 향상되어 타키 및 미국시장 공략
- ❖ 반덤핑관세 회피 및 즉시 관세 혜택으로 향후 200만 불 수출 효과

**FTA 활용 특징 및 시사점**

**활용사례 특징**

- 일반적인 FTA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FTA 활용지원이 아닌,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품목 분류 및 기술개발 · 연구 등 실질적인 FTA 활용 지원  
→ 생산물품 품목분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등 실질적인 지원
- 체결국별 양허조건 분석, 관세 즉시철폐 품목 발굴 및 FTA 활용을 위한 투입원사의 혼용률 조정 등 생산기술과 전문한 적극적인 FTA 활용  
→ FTA 활용을 위한 신제품 개발 성공으로 미국 등 거대시장 선제점령

- 대표적인 사양 산업으로 꼽혔던 섬유산업을 기관별 역할분담 등 효율적인 FTA 지원을 통해 위기의 지역 섬유산업을 재도약의 전기 마련
  - 15개 업체 FTA 활용 신제품 개발, 매출증가 100억원(평균 9.1% 신장), 고용창출 30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의 근간산업인 섬유업계에 FTA 활용에 대한 자신감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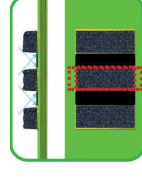
### 시사점

- 협정별 / 품목별 철저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관세철폐 스케줄 분석을 통한 고품질 한국산 신제품 개발로 가격 경쟁력 향상
  - 관세철폐 품목의 신제품 개발로 거대 FTA 시장 공략
- FTA 활용으로 8~32%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중국산과 가격 차이를 거의 상쇄하며, 비슷한 제품일 경우 바이어 입장에서서는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하고 납기를 성실히 준수하는 한국산 선호
  - FTA 활용을 통한 원가절감 및 고품질 섬유제품 개발 필수
- FTA 활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업체를 위해 민-관-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주요 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을 지원한 사례
  - 섬유업종 뿐만 아니라 타 업종에서도 FTA 활용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 가능

## 원산지 시후검증 대응 분야 : 최우수상(신한관세법인) 원산지 검증 뒤엎은 한판 승부

### 기업소개

- 업체명 : K 테크놀로지
- 업체 개요  
K 테크놀로지는 국내 3차원(3D) 정밀 측정 검사 장비 전문 업체로서 2차원(2D)으로 하던 납도포 검사를 3차원(3D)으로 바꿈으로써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강소 기업임
- 주요 수출 품목  
K 테크놀로지가 제조, 판매하는 "ASPIRE 2" 제품은 PCB 외관을 내장 카메라로 촬영하여 PCB 외관의 상태를 측정 검사 하는 장비로 특히 받은 4방향 Projection 기술을 적용하여 PCB 외관의 그림자, 난반사, 기준면 그림자 문제 및 Projection 방향성 문제를 측정 검사 하는 장비임



● 매출액 (수출액)

2011		2012		2013	
매출액	수출액	매출액	수출액	매출액	수출액
802	718	1,008	848	1,039	931

단위 : 억원

● 주고객사 별 수출비중

주고객사	C/S Automotive	F/Si Cellur phone	F/Si Electronics	J/Si Electronics
소재지	독일	중국	미국	미국
수출비중	6.5%	5.8%	4.3%	3%

K 테크놀로지의 한-미 FTA 활용

한-미 FTA 활용

- 미국과의 거래 형태
  - K 테크놀로지는 미국 내 판매대리인 격인 미국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본 판매 대리인이 미국 내의 영업, 판매 및 고객 관리를 하고 있음
  - K 테크놀로지의 판매대리인이 직접 수입자가 되어 고객사에 납품하는 형태(판매대리인 Normal 거래)와 고객사가 직접 수입자가 되어 물품을 직접 수취하는 형태(End User Normal 거래)로 수출, 판매가 이뤄지고 있음
- 한-미 FTA 활용을 통한 관세 절감 혜택
  - K 테크놀로지가 제작, 판매하는 "ASPRE 2" 제품은 미국 내 HS CODE(HTS)기준에 의거 제9031.49-7000호로 분류되며 미국 수입통관시 관세율 3.6%가 적용되어 왔음
  - 한미 FTA를 통해 0%의 협정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연간 342,626,000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음
- 주문제작 방식을 통한 생산 제품 관리
  - K 테크놀로지는 고객이 요구하는 옵션을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 주문제작방식을 통해 제품을 생산 및 관리하고 있음
  - 고객의 P/O(구매주문)를 받으면 K 테크놀로지의 내부 ERP 시스템 상 "Tracking Number"가 자동 생성되며, 해당 Tracking Number를 통해 제품의 BOM 관리, 협력업체의 부품 주문, 제품 생산도면 등의 생산관리 및 원자재의 재고 관리까지 일괄적으로 관리됨

●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 K 테크놀로지는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PSR) 중 아래 표의 "나"목에 해당되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치기준의 결합기준(CTSH+BD45%)"을 선택하여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였음

3차원측정기(coordinate measuring machines)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집조]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조법의 경우 8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여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다. 다른 물품(같은 호호의 물품을 위한 베이스 및 프레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생산된 것

- K 테크놀로지는 수출 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지을 발급하여 미국에서 통관 시 합장관세를 적용받았음

K 테크놀로지의 미국세관 검증 요청 및 대응  
K 테크놀로지의 미국세관 검증 대응 상황

2014.01.21	2014.03.18	2014.03.24	2014.06.16	현재
Miami 세관 검증자료제출 요청	Boston 세관 검증자료제출 요청	Miami 세관 검증결과 통지(Negative)	Boston 세관 검증결과: 통지 (Positive)	Miami 세관에 이의제기 (Protest) 준비중

미국 Miami 세관으로부터의 검증 요청 및 결과통지

- 요청 내용(CBP Form 28)
  - K 테크놀로지는 미국 내 판매대리인 격인 미국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본 판매 대리인이 미국 내의 영업, 판매 및 고객 관리를 하고 있음
  - Miami 세관으로부터 아래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음



- 원산지 증명서, 제조공정도, 제품 정보 서류
-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및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증명 서류
- HS CODE, 원산지, 원재료비가 기재된 BOM 및 원재료 송장
-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 증명서 또는 진술서
- 물품 가격 확인을 위한 구매 Order 및 대금지급 증명서류
- 채포관리, 직접재료 등과 관계된 자료
- IC 사본 또는 미국 구매자료로부터의 대금지급 입증 자료

• 결정 내용(CBP Form 29)

- CBP Form 28에 대한 제출자료에 대해 Miami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한국산 불인정)을 받음

- 상품이 품목별기준(PSR)을 어떻게 충족시키는 지에 대한 근거자료 불충분
- 공제법에 따라 적용한 45% 대한 근거자료 불충분
- 원재료 송품장, BOM과 기타 제출 서류들이 한국어로 작성됨.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미국 Boston 세관으로부터의 검증 요청 및 결과통지

- 요청 내용(CBP Form 28)
- Miami 세관의 검증요청 서류와 거의 동일하지만 과세가격에 대한 추가 증빙 서류를 요청함

-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에 대한 정보
- 미국 내 과세가격에 대한 증명서류(거래가격 배제 조건에 대한 증빙)
- 원산지 증명서
- HS CODE, 원산지, 원재료비가 기재된 BOM 및 원재료 송장
-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 증명서 또는 진술서
- 원기자료(원산지 결정기준이 역내가치기준 충족을 요구하는 경우)
- 생산 제조기록, 구성품의 원산지 규격을 보여주는 제조 공정도 등 기타 자료

- 검증 대응 방식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의 재검토
- Miami 세관에 검증 자료를 제출 시 제9031.49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CTS+BD45%)”으로 검증자료를 제출하였음. 하지만, Boston 세관에 대응자료 제출 시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경우 컨설팅을 통해 “세번변경기준(CTA)” 기준과 한-미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제 6.6 조  
최소허용수준

1. 부속서 6-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6-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한다. 다만,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 의견서 추가 제시
-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편장 및 원산지인증을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HS CODE 분류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Miami 세관에 제출한 HS CODE의 증명서류 이외에도 HS CODE 4단위가 밀리지는 모든 원재료 (52개)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함

**Miami 세관 제출 자료**

**Boston 세관 제출 자료**



정윤호 매니저  
전남 FTA  
활용지원센터

## 원산지관리사로 블루오션을 향해하다!

원산지관리사 첫번째 합격수기,  
전남 FTA 활용지원센터 정윤호 매니저의  
「원산지관리사 취업성공기」를 들어본다.

### 원산지관리사에 도전!

저는 지방소재 대학의 무역학과에 입학하여 서울지역 대학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무역전문기양성사업(이하 GTEP)이라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국 대학교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실무적인 무역을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FTAs를 통해 진라남도라는 “무역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이 바로 원산지관리사에 대한 도전입니다. 흔히 무역학과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은 국제무역사와 관세사가 있지만, 국제무역사라는 자격만으로 무언기를 하기에에는 역부족이며, 관세사를 준비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FTA 전문 자격증인 원산지관리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 즐거웠던 준비기간

전라남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하였던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수강을 통해 원산지관리사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 관세혜택을 볼 수 있지만, 협정별 · 상품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하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FTA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바로 원산지관리사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FTA 전문가가 되어 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원산지관리사를 공부하다보니 원산지관리사 각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점차 전문가가 되어간다는 생각에 즐겁게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 모든 증빙 서류의 영문화 필수
- 미국 세관에 검증자료를 제출할 때는 관련된 모든 서류를 영어로 번역 후 제출해야 함
- Miami 세관에 제출된 증빙 서류 중 한글이 사용된 ERP 캡처 화면을 증빙 서류로 제시하
- 애틀랜타에 모든 증빙 서류의 영문화 작업 실시한 후 제출함

**Miami 세관 제출 자료**

**Boston 세관 제출 자료**

- 결정 내용(CBP Form 29)
- CBP Form 280에 대한 제출자료에 대해 Boston 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한국산 인정)을 받음

검증결과 역내산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품임

### 향후 업체 대응 방안

#### 이의신청(Protest) 준비

- 미 Miami 세관의 “Negative(한국산 불인정)” 회신(CBP Form 290)에 대해 이의제기(Protest)를 준비 중에 있음

#### FTA 원산지 시스템 구축

- 내부 ERP 시스템의 “Tracking Number”를 통한 원산지 관리를 넘어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도입 및 내부 IT 구성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